

당헌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없음.	부칙 신설.  제1조(22대 국회의원총선거 특례)  당헌 제 52조(각급 공직후보자 선출)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 한하여 연합정당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의 결정은 선대본부 장단회의 의결에 따른다.